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5. 2. .
제 출 자 이희성 의원

1. 개정이유

-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므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체육시설 및 단체의 근거 신설(안 제2조8호, 9호)
-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의제공 근거 신설(안 제10조의1, 제10조의2)
-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3. . ~ 2025. 3.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5. 1. . ~ 2025. 2.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체육과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김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9.“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김포시장래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체육진흥”을 “김포시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시설
2.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단체”를 “장애인 체육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김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p> <p>1. ~ 7. (생략)</p> <p>8.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p>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9.“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김포시 체육진흥-----

-----.

제10조의2(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시설
 2.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p>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생략)</p> <p>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u>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u>의 육성 및 지원</p> <p>4. ~ 8. (생략)</p>	<p>1. <u>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u></p> <p>2. <u>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u></p> <p>3. <u>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u></p> <p>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p> <p>제11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장애인 체육단체</u>----- -----</p> <p>4. ~ 8. (현행과 같음)</p>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40호, 2025. 1.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2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3. 9. 14.>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1호, 2024. 1.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약칭: 스포츠산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9호, 2023. 10. 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0호, 2024. 2.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 2020. 10. 30.]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61호, 2020. 10. 30., 제정]

경기도 김포시(체육과), 031-980-25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자발적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에 따른다.

1. “체육지도자”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2.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김포시체육회나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김포시체육회에 소속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8.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 3. 전문체육 관련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3. 생활체육관련 국내외 교류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6.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체육 동호회)

-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 :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
- ②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동호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6. 장애인 체육대회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육 향상 지원
 4.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에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 2. 관서운영 기본경비
 - 3. 사무시설 임차료
 - 4. 기타 지원에 필요한 운영 경비
-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 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 또는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61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580호
----------	--------

제출년월일 2025. 3. 12.
제출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2조제9호의 ‘장애인 체육단체’ 정의를 개정할 경우,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이 불충분한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받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에 안 제2조제9호를 현행 조례 제2조제8호의 ‘장애인단체’ 정의로 수정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김포시’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개정안 제3조에는 ‘김포시’에 대한 약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체육단체’에 관한 정의 수정(안 제2조제9호)
- ‘김포시’ 약칭 반영(안 제3조)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장애인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김포시 체육진흥”을 “시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체육단체”를 “장애인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p> <p>1. ~ 8. (생략)</p> <p>9. <u>“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김포시장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김포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u>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p> <p>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생략)</p> <p>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u>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u></p> <p>4. ~ 8. (생략)</p>	<p>제2조(정의)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장애인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를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 ----- <u>시 체육진흥</u>----- ----- -----.</p> <p>제11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장애인단체</u>----- -----</p> <p>4. ~ 8. (현행과 같음)</p>